

방폭면외의 3면의 준방폭식 벽의 구조기준

(제12조제2항제2호관련)

위험공실의 구분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의 구조기준
화약류(꽃불류등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	정체량 4킬로그램 초과인 경우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정체량 4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꽃불류등의 위험공실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	정체량 30킬로그램 초과인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정체량 3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망시멘트 모르타르칠,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블록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화성이 있는 구조

(주) 이 기준의 정체량은 화공품에 있어서는 그 원료가 되는 화약 또는 폭약의 수량을 말한다.